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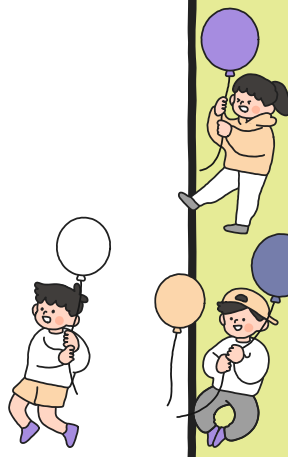

환경보건법 개정('21.7.6) 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별표2 개정)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[1]·프탈레이트류[2] 항목 강화·신설

❶ **납 강화 기준 :** (기존) 0.06퍼센트(600mg/kg) 이하 → (변경) 90mg/kg 이하

❷ **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:**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

항목	대상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2호 가목	도료 또는 마감재료	납은 질량분율로 0.06퍼센트 이하일 것	**납은 함량으로 90mg/kg 이하일 것**	기본검사 결과, 측정값이 기준의 70%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
	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(표면재료)	〈신설〉	**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*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**	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 (시료채취) 실시
제5호 다목	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	〈신설〉	**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* 총함량이 0.1퍼센트 이하일 것**	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 (시료채취) 실시

* 프탈레이트류 7종 :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, DIBP

강화 기준 적용 시점 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부칙 제31875호, '21.7.6.)

구분	적용시점
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	**2026년 1월 1일부터** 적용*
2022년 4월 7일 후에 설치된 시설	**2022년 4월 7일부터** 적용

* 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 **연면적 33㎡ 이상 증축**하거나 **70㎡ 이상 수선**한 경우(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)는 2022년 4월 7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

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**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**됩니다.
「환경보건법」제23조에 따라 **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**는
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
QR코드의 「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상시 가이드」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